

南北상사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Problems and Solutions of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North Korea

최석범*
Seok-Beom Choi
박근식**
Geun-Sik Park
김태환***
Tae-Hwan Kim
김재학****
Jae-Hak Kim
박선영*****
Sun-Young Park

〈목 차〉

- I. 서 론
- II. 남북한 상거래 분쟁해결제도의 비교
- III.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관련 합의서 상의 주요내용
- IV.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 V. 결 론

주제어 : 남북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법, 중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I. 서 론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 16일에 개최되었다. 이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투자보장합의서는 경협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투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4개 경협합의서 조약비준 동의안을 2001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과 대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계류되어 왔다. 국내 기업과 경제 5단체는 북한 진출을 위해 이 동의안의 국회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북한도 우리측에 4대 경협합의서 발효를 촉구하였다. 2003년 7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으며,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을 마쳐 8월 20일에 발효되었다.

상사분쟁해결합의서는 남과 북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였다.

국가간 교류협력은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상호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며 민족간 공동이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동질적인 입장에서 상호 만족을 우선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상사분쟁과 의견대립에 관련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협의, 조정 및 중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관련된 논문 수편이 발표되었는데 김상호교수

(2004)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방안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주요과제와 효율화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최장호교수(2004)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문제성과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초안작성상의 문제성과 초안작성시 고려할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고 서정일박사(2005)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내용으로 볼 때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 당국이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관련 합의서 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운영상의 그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을 도출하여 남북상사중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남북한 상거래 분쟁해결제도의 비교

1. 남한의 상거래 분쟁해결제도

(1) 민사소송제도

남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사적 소유권의 경제주체인 사인으로서의 개인이나 법인 상호간에 발생되는 분쟁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국가법원을 통하여 그들의 자치적 분쟁해결권능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제출하는 사실 및 증거를 토대로 민·상법 기타 특별법 등 성문의 실체법에 의거하여 적정·공평·신속·경제를 이상으로 탈이데올로기적·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¹⁾

남한의 민사소송법은 자본주의적, 시민적, 자유주의적 소송관에 입각하여 민사소송의 본질을 사적 이익의 다툼으로 이해하고 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처분주의 및 변론주의로 이해되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다.²⁾

(2) 중재제도

중재제도는 사인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³⁾ 고도산업사회의 도래이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6, p.45.

2) 법원행정처,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1995, p.12.

3) 이주원·김경배·신군재,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무역경영사, 2003, p.421.

분쟁이 국가법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단체가 자치적으로 설립한 중재원이 국가법원과 병렬적·중첩적·선택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준사법적(quasi-judicial)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⁴⁾

1966년에 제정된 남한의 중재법은 1973년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그 원형은 일본 민사소송법 제786조-805조와 아주 유사하며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현재 남한 중재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동일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재법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설립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제정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에 민사거래에서 발생하는 중재사건에 대하여 일반적 관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미국의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AAA), 영국의 런던중재법정(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LCIA),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 JCAA)와 같이 국제무역에서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일반적 관할권을 갖는다.⁶⁾

2. 북한의 상거래 분쟁해결제도

(1) 민사소송제도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사회주의적 소송관에 입각하여 소송에서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인정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본질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환으로만 이해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된 재판소의 지도통제에 입각한 철저한 직권주의를 취하였다.⁷⁾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사회주의경제체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적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분쟁, 가족생활을 둘러싼 가사분쟁, 기타 개인간에 발생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판이나 중재를 하여야 하고, 민사시효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재판 또는 중재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민법⁸⁾에 명시되어 있어 분쟁당사자는 민사시효기간 내에 재판이나 중재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심리해결하여야 할 사건의 범위와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¹⁰⁾

4) 김홍규, “남북한의 민사재판제도 및 중재제도의 비교”, 「북한법연구」, 제1호, 북한법연구회, 1997, p.72.

5) 곽영실·김석철, 「최신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p.165.

6) 김홍규, “한국중재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세계중재인대회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대한상사중재원, 1996, p.3.

7) 법원행정정처, 전재서, p.12.

8) 북한의 민법은 현재 1990년 9월 5일에 채택된 총 271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9) 신한동,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0, p.7.

1994년 5월 25일에 공포된 북한민사소송법의 제24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심리해결하여야 할 사건의 대상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법에 의하여 중재 또는 행정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 분쟁사건

② 이혼사건, 자녀양육 및 부양료청구와 관련된 사건

③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들에 대한 재판상 확인사건

예컨대 소유권확인소송, 결혼사실확인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④ 법에 의하여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된 사건

그 밖에도 국가법, 행정법관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¹¹⁾

민사소송의 대상은 사적 소유를 둘러싼 근로자들의 소비생활과 가정생활분야에서 제기되는 분쟁을 심리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에¹²⁾ 남한의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그 의미와 중요성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은 주체사상의 실현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에 두고 있으며 그 기본원칙으로는 민사소송절차에 광범위하게 인민대중을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시키는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소송절차의 원칙으로서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한 증거재판의 원칙¹³⁾과 소송담당자의 소송상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¹⁴⁾

(2) 중재제도

1) 국내중재

북한의 중재제도는 일반적인 중재제도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국가중재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¹⁵⁾ 북한은 중재에 관하여 “다투는 두 당사자사이의 경제거래과정에 제기되는 분쟁문제들에 대하여 시비를 가지고 해결을 내리는 중재기관의 활동”이라고 하고 중재는 분쟁문제의 성격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비롯하여 국가중재, 무역중재, 국제중재 등으로 구분되고 북한에는 국가중재와 무역중재가 있다.¹⁶⁾ 국가중재는 개인이 아닌 경제기관, 기업소, 단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국가재판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여

10) 김정금·이황, 「민사소송법(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p.51.

11) 이승연, “북한의 재판제도”, 「북한법연구」, 제7호, 북한법연구회, 2004, p.114.

12) 김정금·이황, 전개서, p.29.

13) 전개서, p.62.

14)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제27권, 1984, p.61.

15)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pp.13-14.

16) 사회안전부출판사, 「민사법사전」, 1997, pp.531-532.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활동을 의미하게 된다.¹⁷⁾

북한에서 국가재판소(법원)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간의 재산분쟁은 취급하지 않고 이들간의 분쟁은 중앙재판소와 도재판소의 중재부가 심리 해결한다.¹⁸⁾ 북한의 이러한 중재부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관리기관의 하나로서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중앙재판소와 도재판소의 중재부에서 심리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이고, 그 분쟁이 국가가 그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인민경제계획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간 거래의 대부분은 국가의 계획기관으로부터 주어진 계획과제에 근거하여 행하여진다. 계획과제가 주어진 양당사자는 계획과제를 구체화하여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중재부의 재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다.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계획과제와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중재부가 재정을 한다. 국가중재부는 단지 법률상의 위법여부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분쟁당사자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데 이는 일반국가재판소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재부는 분쟁을 심리해결하는 협의의 중재 외에 인민경제계획과제를 받은 경제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이 계획 및 계약규율을 엄격히 지키는가를 검열·감독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즉, 중재부는 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에 제의(검열)를 한다. 제의를 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심의하여 대책을 세운 후 그 정형을 회보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계획 및 계약규율을 강화하고 체결기관의 독립채산제를 공고히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¹⁹⁾

이상과 같이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간에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의 해결은 일반민사사건과 달리 중앙재판소와 도재판소 중재부가 담당한다.²⁰⁾

중재원은 분쟁사건을 심리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외의 계획 및 계약규율에 위반한 당사자에게 위반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개별적 일꾼들에게 국가와 사회에 끼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나 검사기관에 넘기는 방

17) 전계서, p.532.

18) 이황, 「중재법학(법학부용, 제2판)」, 1991, p.44, p.47.

19) 이황, 전계서, p.109.

20) 중앙재판소 중재부는 중앙기관이 피고로 나서는 분쟁사건과 그 일꾼들의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도재판소 중재부는 중앙기관(원고)과 지방기관, 기업소 사이 그리고 지방기관·기업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과 지방기관, 기업소와 그 일꾼들의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이황, 전계서, p.47, p.48.

법으로 재판을 한다.²¹⁾ 중재에는 심급제도가 없고 3인의 중앙재판소 중재국의 재결원으로 구성되는 재심제도가 있을 뿐이다.²²⁾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인민계획경제에 기초한 계약상의 분쟁을 사법적 구조로 해결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사소송제도와 유사하지만 벌금을 부과하거나 개별적 일꾼들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나 검찰기관에 넘기거나 검열·감독업무, 제기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는 형사재판적 특성과 행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특유의 분쟁해결 및 인민계획경제수행 체계를 이루고 있다.

2) 국제중재

북한에서는 국가기업(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간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와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이원성에 입각하여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적 법질서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거래의 법규범은 사회주의 법질서의 확립, 즉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실현을 위한 근로인민의 의사의 표현이다. 따라서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면에서도 국영기업 상호간의 내국중재와 국제적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거래의 법규범은 사회주의법질서의 확립이나 인민민주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을 위한 인민의 의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이성 내지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다.²³⁾ 특히 국제상사중재는 국제적 법질서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정국의 국내법질서가 기준이 될 수 없다.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계약의 이행, 불이행, 불가항력, 위험부담 등에 있어서 상세히 정해져 있는 국제거래상의 통일약관, 그 밖에도 당사자간의 개별적 계약에 의한 세목이 그 기준이 된다. 통일약관·표준계약서식이 완전하면 할수록 개별적인 특단의 규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점은 비록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는 국제거래의 당사자는 국영기업 내지 사회협동단체이고 국가와는 달리 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다. 북한의 대외적인 무역거래에서 대외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무역중재위원회」도 국가기관이고, 중재위원도 그리고 중재의 북한측 당사자도 그 성질상으로는 다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의미에서 동일인이다. 시장경제체제를 취한 남한에 있어서는 중재인과 중재의 당사자는 동일인이 될 수 없다. 즉 재판관과 당사자는 동일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충실하면 이를 중재인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에 의한 중재를 중재로 보지 않는다면 남북한

21) 이황, 전계서, p.90.

22) 전계서, p.99.

23) 三ヶ月章 編, 「現代の裁判」, 1965, p.255.

의 무역상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실 1958년 6월 10일의 「외국중재제도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조약」 전에 뉴욕주법원에서 당시의 공산권국가의 맹주인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중재를 한다는 취지의 약정에 대한 효력이 논의되었고²⁴⁾ 스위스의 쥬리히법원에서도 당시의 공산권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선고된 중재판정의 효력이 논의되었으나²⁵⁾ 결국 양자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하였다. 1958년 6월 10일의 상기 뉴욕조약의 토론과정에서도 한 때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동조약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설중재기관(permanent arbitral body)에는 이들 국가기관인 무역중재위원회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고 1999년 8월 2일 중앙방송을 통하여 본법을 채택·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외국투자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북한도 국제무역중재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비록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분쟁해결의 사례 내지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새로이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한 것은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극복의 핵심이 서방의 외자유치에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대북투자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이 채택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대북투자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북한이 해외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²⁶⁾

북한은 경제개방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6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²⁷⁾ 그러나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은 1997년말 기준 ‘라진-선봉지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계약실적 111건 7억 5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 이행된 실적은 77건 5천 8백만 달러에 그쳐²⁸⁾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낮은 대외신인도, 정보의 비공개성, 열악한 투자환경과 투자관련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법제정비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대외경제중재법’의 채택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

24) Amtorg Trading Corp. v. Camden Fibre Mills Inc., Court of Appeals of New York, 1952, 109 N.E. 2nd, 1953, p.606.

25) Firm Ligna v. Baumgartner & Co., A.G.II Zivil-Kammer des Obergerichts des Kantons Zrich, II Z.K. Nr. 125A(R), 1957.

26)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관한 고찰-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전계서, p.61.

27) 박정원, ‘북한의 법률용어분석(IV)’, 전계서, pp.64-115.

28) 김광록,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7집, 한국법학회, 2004, p.450.

와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사건심의규정(1989.01)이 무역중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대외중재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⁹⁾ 그리고 중재심문에 직접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북한 대외무역 중재위원회 심문규칙(Rules of Hearing)이 적용되고 있다.³⁰⁾ 1995년 중재법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서 개인, 특히 대외중재와 관련하여 그 적용의 여지가 없었다. 비록 적용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자주적이고 임의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중재제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³¹⁾

III.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관련 합의서 상의 주요내용

1.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도입배경

2000년 12월 16일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등 4개합의서가 서명되었고 2003년 8월 20일 남북당국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4개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하였고 이후 10월 13일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 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남북당국 간에 제도적 중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도입으로 장래 남북한간에 발생하는 교역 및 투자분쟁이 이러한 제도적인 구조내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

29) 박정원,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p.202.

30) 양병희, 전계서, p.38.

31)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분석」, 「북한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논점-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보고-」, 법원행정처, 2001, p.182.

의서가 작성되었다. 이 합의서의 체결로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³²⁾

〈표 1〉 합의서상 위원회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판할 제9조 중재신청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17조 조정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제12조 통지

2. 중재위원회 주요내용

(1) 법적 지위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 · 보충을 중재위원회의 핵심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³³⁾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사중재위원회가

32)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 운영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2004.9, p.5.

3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1항.

중재·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는 1966년 10월 14일에 발효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약(워싱턴협약)’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에 법인격을 인정한 바 있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KEDO의 법인격을 인정한 바 있다.³⁴⁾

이와 같이 중재위원회가 상사분쟁해결기구로서 남과 북에서 각기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당사자능력도 인정된다. 중재위원회의 성격을 구분하는 실익에 있어서는 이를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의 면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³⁵⁾와 분쟁의 성격상 조약의 성격을 가진 국제중재로 보는 견해³⁶⁾가 구분되어 아직 학설상의 정설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³⁷⁾ 그러나 중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반면 남북교역이 내국간의 특수거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중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조약적인 성격을 가진 내국중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³⁸⁾ 왜냐하면 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는 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구로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³⁹⁾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⁴⁰⁾고 규정하고 있다. 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남과 북이 각기 정한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⁴¹⁾ 남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과 위원을 지명하며⁴²⁾ 쌍방 위원장은 중재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⁴³⁾ 쌍방의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

34)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계서, p.3.

35) 강병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방안”, 「남북 경협과정에서 예상되는 상사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제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법무부, 2004.6.28, p.107.

36) 김명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해설”, 「중재」, 제311호, 대한상사중재원, 2004.3, p.31.

37) 서정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효율적 운영방안”,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12, p.56.

38) 남북간 특수거래관계에 기인하여 중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측면을 고려한 구분이다.

3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2항.

40)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2조.

41)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1항.

4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2항.

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⁴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⁴⁵⁾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⁴⁶⁾ 쌍방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고⁴⁷⁾ 쌍방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⁴⁸⁾

(3) 위원회의 기능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②「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③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④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⑤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⑥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등이다.

이러한 기능과는 별도로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권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⁴⁹⁾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 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⁵⁰⁾ 또한 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하고⁵¹⁾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⁵²⁾

(4) 위원회 의사결정형식과 결정의 효력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⁵³⁾고 규정

4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3항.

44)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4항.

4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5항.

46)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6항.

4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7항.

48)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8항.

4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3조 제2항.

50)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3조 제2항.

51)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3조 제3항.

5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3조 제4항.

5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

하고 있고 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⁵⁴⁾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중재위원회는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되며⁵⁵⁾,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위원장은 자기측 위원원에서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⁵⁶⁾

중재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⁵⁷⁾ 중재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쌍방 위원장이 별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⁵⁸⁾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⁵⁹⁾ 중재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⁶⁰⁾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⁶¹⁾ 중재위원회의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고⁶²⁾ 중재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⁶³⁾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⁶⁴⁾

(6)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⁶⁵⁾ 그리고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54)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4조

5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1항 가, 나.

56)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2항.

5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3항.

58)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4항.

5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5항.

60)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6항.

61)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7항.

6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8항.

6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9항.

64)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6조.

6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1항.

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⁶⁶⁾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⁶⁷⁾ 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⁶⁸⁾고 규정하고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⁶⁹⁾고 규정하고 있다.

(7)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관할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는 첫째,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인데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⁷⁰⁾ 둘째,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을 관할하는 것⁷¹⁾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중재신청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⁷²⁾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⁷³⁾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⁷⁴⁾

(9)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하는데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

66)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2항.

67)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3항.

68)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

6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2항.

70)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제1항.

7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제2항.

72)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9조 제1항.

7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9조 제2항.

74)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9조 제3항.

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⁷⁵⁾ 그리고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⁷⁶⁾

(10)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취소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⁷⁷⁾

중재판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⁷⁸⁾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⁷⁹⁾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⁸⁰⁾

(11) 조정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고⁸¹⁾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⁸²⁾

(12) 위원회의 활동보장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하고⁸³⁾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의 관계자에 대한 신변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⁸⁴⁾

7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제3항.

76)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제4항.

77)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6조 제3항.

78)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제1항.

7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제2항.

80)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제3항.

8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7조 제1항

82)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7조 제4항

8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9조 제1항.

84)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9조 제2항.

중재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⁸⁵⁾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⁸⁶⁾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⁸⁷⁾

남북 쌍방의 중재위원회에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해결합의서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⁸⁾ 분쟁해결합의서에 따라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중재인 선정기관으로 되는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르면, ICSID에 제기된 중재사건과 관련해서 ICSID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중재인선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 쌍방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중재위원회와 별도로 중재판정부의 2원적인 분쟁해결구조를 갖는다.⁸⁹⁾

IV.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1) 위원회의 발족의 지연

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⁹⁰⁾고 규정되어 있어 2003년 10월 13일에 서명되었기 때문에 벌써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이 교환되어야 함에도 위원회의 명단은 교환되었으나 중재규정의 초안도 한국에서의 논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실제로 초안이 교환되지는 않고 있다.⁹¹⁾

8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9조 제3항.

86)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9조 제4항.

8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9조 제5항.

88)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제4항.

89) 강병근, 전계서, p.115.

90)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4조 제4항.

91) 초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최장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문제점과 기본원칙”,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pp.47-72.

2006년 7월 4일에 교환된 위원회에서 남측은 공무원 3명,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측은 민경협소속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⁹²⁾

(2) 위원회 구성과 합의방식의 문제점

위원회의 구성은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총 1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측위원회 5명과 북측위원회 5명이 합의도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양측이 민감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겠으나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양측위원회의 입장에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대한 의장중재인의 선정의뢰문제

ICSID에 대하여 의장중재인 선정을 의뢰하는 것이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상 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⁹³⁾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ICSID의 중재인 선정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져 중재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⁹⁴⁾ 또한 ICSID에서 남북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3국 인사를 의장중재인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중재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남북의 실체법에 익숙하지 못한 제3의 의장중재인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남북경제협력관계상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중재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중재당사자들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자국의 공서양속과 강행법규위반을 주장할 수 있어, 중재판정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4) 중재판정의 구속력에 대한 단서조항의 모호성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재판정의 구속력과 관련한 단서조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를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5) 중재판정이 취소된 후 중재절차의 재개시문제

남북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특이한 사항으로 일반중재법리상에서

92) 김광수,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7 FTA와 남북경협 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국제e-비즈니스학회·한국통상정보학회, 2007.1.30, p.240.

93) 서정일, 전계서, p.62.

94) 최장호, 전계서, pp.56-57.

도 다소 일탈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판정이 내리진 사안에 대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중재절차를 개시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신뢰성을 상실하는 처사가 아닌가 판단된다.

(6) 조정요청시에 중재절차의 중지문제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중재절차 신속성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즉, 쌍방의 조정신청이 있다고 해서 중재절차를 중지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7) 중재규정의 초안작성상의 문제

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북한이 따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그 초안에 대한 절충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재규정의 제정은 중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간의 합의로서 그 절충점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충점을 쌍방의 합의로서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8) 기타 기피신청, 이의신청, 취소신청에 대한 사유 불명시

위원회의 기능에서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권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언급만이 있지 그러한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2. 활성화방안

(1) 위원회의 신속한 발족과 운영

2006년 7월 4일에 교환된 위원회명단에 따라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여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정부소속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그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⁹⁵⁾ 이러한 중재사무처리기관의 기능은 ①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하는 것, ②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

9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부하는 것,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⁹⁶⁾

(2) 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위원회의 구성은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총 1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 중 4명을 객관적인 제3자의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남측위원회 3명과 북측위원회 3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합의 도출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객관적인 제3자의 기관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ICSID와 같은 기관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국제성을 가진 중재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⁹⁷⁾

(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대한 의장중재인의 선정절차개선

ICSID에 대하여 의장중재인 선정을 의뢰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ICSID에 남북한 상사중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중재인으로 활동이 가능한 중재인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재인명부에서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의장중재인을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ICSID의 중재인 선정상의 지역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3국 인사를 의장중재인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중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재제도의 개선과 남북한 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외국전문가를 중재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중재판정의 구속력에 대한 단서조항의 명확화

중재판정의 구속력과 관련한 단서조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재규정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여야 한다.

(5) 중재판정이 취소된 후 중재절차의 재개시문제의 개선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96)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제2항.

97) 김상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방안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pp.3-45.

이다. 물론 당사자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수용하여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는 있다고 하나 규정 자체에서 재재시를 다루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조정요청시에 중재절차의 지속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절차와 무관하게 중재절차를 진행시키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2>와 같이 조정이 있다고 해서 중재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 중재는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하기 때문에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언제든지 화해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2> 동북아주요국가들의 조정관련 규정의 비교

구 분	내 용
한국(중재규칙)	기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을 조정에 회부(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18조)
중국(중재법)	중재판정부는 판정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자원 할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시에 판정해야 한다. 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결과에 근거하여 판정문을 작성한다. 조정서와 판정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중국 중재법 51조)
대만(개정중재법)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여 중재인을 선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재인은 그 결과를 조정합의서에 기록해야 한다. 조정합의는 중재절차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조정합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집행신청을 승인하고 집행명령을 내린 후에만 집행이 가능하다.(대만 중재법 45조)

(7) 중재규정의 초안작성상의 문제개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기 이전에 어느 국가 또는 어느 기관의 중재규정을 모델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중재규정을 신속하여 도출할 수 있고 초안에 대한 절충작업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대외경제중재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북한의 중재법은 국가중재제도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초안이 국가중재제도에 입각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초안작성상의 기준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8) 기타 기피신청, 이의신청, 취소신청에 대한 사유 명시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권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시아제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비교하면 <표 3>과 같은데⁹⁸⁾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3〉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 규정 유무에 대한 비교

구분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중재합의 무효 또는 비타당성	0	0	0	0	0
중재절차상 적법절차 위반	0	×	0	0	0
중재판정부의 무권한·유월판정	0	0	0	0	0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상 하자	0	0	0	0	0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	0	×	×	0	0
공서양속에 반하는 판정	0	0	×	0	0

V. 결 론

최근 개성공단 건설,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의 관계를 보다 화해무드로 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서명·발효되어 남북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남북한 경제협력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어 남북경협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남북상사중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98) 최석범,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무역상부연구」, 제2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8.30, p.60.

된다. 그 중에서도 중재규정의 제정과 개정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위원회의 명단은 교환되었으나 위원회의 발족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측위원회 5명과 북측위원회 5명이 합의도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ICSID에 대하여 의장중재인 선정을 의뢰하는 것이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상 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넷째, 중재판정의 구속력과 관련한 단서조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를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섯째,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여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일곱째,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북한이 따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그 초안에 대한 절충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덟째,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등 신청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성화방안으로서 첫째, 교환된 위원회명단에 따라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여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원회의 위원 중 4명을 객관적인 제3자의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ICSID에 대하여 의장중재인 선정을 의뢰하는 것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재판정의 구속력과 관련한 단서조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조정절차와 무관하게 중재절차를 진행시키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기 이전에 어느 국가 또는 어느 기관의 중재규정을 모델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여덟째,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등 신청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경제협력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협력사업 당사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국제사회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병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방안”, 「남북 경협과정에서 예상되는 상사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제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법무부, 2004.6.28.
- 곽영실·김석철, 「최신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4.9.
- 김광록,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7집, 한국법학회, 2004.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7집, 한국법학회, 2004.
- 김광수,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7 FTA와 남북경협 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국제e-비즈니스학회·한국통상정보학회, 2007.1.30.
- 김명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해설”, 「중재」, 제311호, 대한상사중재원, 2004.3.
- 김상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방안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 김정금·이황, 「민사소송법(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 김홍규, “남북한의 민사재판제도 및 중재제도의 비교”, 「북한법연구」, 제1호, 북한법연구회, 1997.
- _____, “한국중재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세계중재인대회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대한상사중재원, 1996.
- _____,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6.
-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분석”, 「북한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논점-특수사법제도 연구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보고-」, 법원행정처, 2001.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분석”, 「북한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논점-특수사법제도 연구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보고-」, 법원행정처, 2001.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관한 고찰-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제4호, 북한법연구회, 2001.
- _____,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_____,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_____, 「북한의 법률용어분석(IV)」, 한국법제연구원, 1998.

- 법원행정처,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1995.
- _____,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1995.
- 사회안전부출판사, 「민사법사전」, 1997.
- 서정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효율적 운영방안”,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12.
- 양병희,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12.
- 이승연, “북한의 재판제도”, 「북한법연구」, 제7호, 북한법연구회, 2004.
- 이주원 · 김경배 · 신군재,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무역경영사, 2003.
- 이황, 「중재법학(법학부용, 제2판)」, 1991.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제27권, 1984
- 최석범,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8.30.
- 최장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문제점과 기본원칙”,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 三ヶ月章 編, 「現代の裁判」, 1965.

ABSTRACT

Problems and Solutions of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North Korea

Seok-Beom Choi

Geun-Sik Park

Tae-Hwan Kim

Jae-Hak Kim

Sun-Young Park

The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defined under the concept of economic relation and cooperation. To resolve any dispute that can arise from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greement on the Procedures to Resolve Commercial Arbitration of South-North Korea' came into force in August 2003.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North Korea will be organized as the member lists of the committee were exchanged in July 2006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committee must become a central system to settle the trade and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was enacted to provide the foreign investors with the safe measures in their investments such as dispute resolution. But this Act can not dispute the trade and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studying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North Korea introduced by Agreement on the Procedures to Resolve Commercial Arbitration of South-North Korea and Agreement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North Korea and fin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North Korea.

Key Words : South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rbitration Act, Arbitration